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80
----------	-------

발의연월일 : 2025. 7. 4.

발 의 자 : 윤준병·최혁진·이병진
허성무·김교홍·이성윤
박희승·장철민·신정훈
민병덕·주철현·박홍배
박 정·송옥주·김윤덕
서영교·김우영·서삼석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에 따른 위원회의 당초 조사기간 만료일은 2024년 5월 26일까지였으나,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2025년 5월 26일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이 종료되었음.

그러나 피해자나 유족이 생존해 있는 사건과 당시 수사기록과 증언이 확보된 사건조차도 기한 부족·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2,000건이 넘는 접수사건이 ‘조사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조

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상정을 앞두고 있는 사건 중 300건 넘게 심의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연장하되, 새로운 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3년 연장하고, 새로 출범할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사건과 조사기록을 승계하도록 하되 이 법의 시행일을 현재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 12월 1일로 명시하여 기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연장을 방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피해자의 권리 보장) ① 정부 및 위원회는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게 진실규명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실규명 과정에 참여할 권리
2. 정부의 배상·보상계획 및 화해를 위한 조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위령사업 또는 추도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25조제1항 중 “3년간”을 “6년간”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건 중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는 새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이 법 시행 이전에 위원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 등을 위한 준비행위 및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등의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진실규명사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조사기록 등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조사한 조사기록과 수집한 자료는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에서 생산·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② . ③ (생략) <u><신설></u>	<u>제3조의2(피해자의 권리 보장) ①</u> 정부 및 위원회는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게 진실규명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실규명 과정에 참여할 권리 2. 정부의 배상·보상계획 및 화해를 위한 조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위령사업 또는 추도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25조(조사기간) ① ----- ----- -----6 년간-----.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36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u>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건 중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

	<u>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 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u>
--	--